

국회에서 의결된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

2020년 10월 20일

국 무 총 리 정 세 군

국 무 위 원

법무부장관

추 미 애

● 법률 제17502호

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단서 중 “「상업등기법」에 따라 상호등기를”을 “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상업등기법」에 따라 상호등기를”을 “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사업자등록을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중 “상호등기”를 “사업자등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상호등기가”를 “사업자등록이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전단 중 “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”를 “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담보권자가”를 “담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담보권자가”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”를 “주소”로 한다.

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재지”를 “담보권설정자의 주소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.

제4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담보권설정자의 성명,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(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,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)
- 3의2. 담보권설정자나 담보권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「부동산등기법」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

제51조제2항 중 “법인등기부나 상호등기부상”을 “법인등기부상”으로, “사무소나 영업소”를 “사무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인등기나 상호등기”를 “법인등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속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접수한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인적범위는 법인 또는 「상업등기법」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됨.

그러나 전체 등록 개인사업자 중 상호등기 사업자 비중이 매우 낮아 사실상 중소기업·자영업자 대부분은 현행법에 따른 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인바,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‘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’에서 ‘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